

7 -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I.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5)’를 운영하여 브릿지 플랜 2020(2016.12)을 발표함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와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7 노인요양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최초 마련함(2006.5)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개정(2015. 12)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노인학대 시설의 위반사실의 공표 등 노인복지시설내의 노인학대 행위자와 시설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명시함, 또한 제39조의5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인권정책 개발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종사자·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2018.4)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입소 전 단계

- ①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내용 등)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하며,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입소 계약단계

- ①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
- ②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입소 계약 '당사자'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며, 인지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본인에 의한 입소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여야 함

3. 생활단계

- 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③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노인요양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중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⑦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 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7 노인요양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⑩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
-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 시설에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⑪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 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반복시키기 위한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요양

-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Ⅱ.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의 장 및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함
-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 제한 등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2015.12, 시행)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
-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110), 경찰(112),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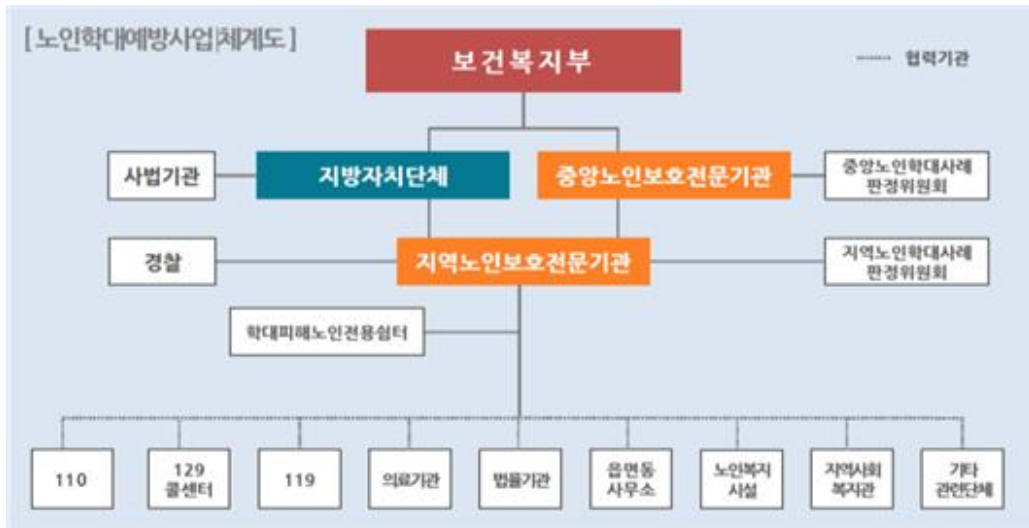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학대예방사업 업무 체계도 〉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교육·홍보와 지원 등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가정의 달로 함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광역시·도 → 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3) 시·군·구

- 담당공무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초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 보호 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담당 공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동행 요청시 반드시 참석해야 함
-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은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동안 공표하여야 함(이하 생략)
-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조치결과를 통보 해야함

- 시·군·구청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에 해당하는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함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의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학대사례 판정,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범인명, 대표자명, 시설명, 시설장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해야하며,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최대 10년 이내) 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서20
- (대상)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관련기관
- (제한기간)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19.6.12일부터 적용)
 - 법률 개정 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제15880호)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취업제한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 ※ 시설장은 시설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노인복지법 제5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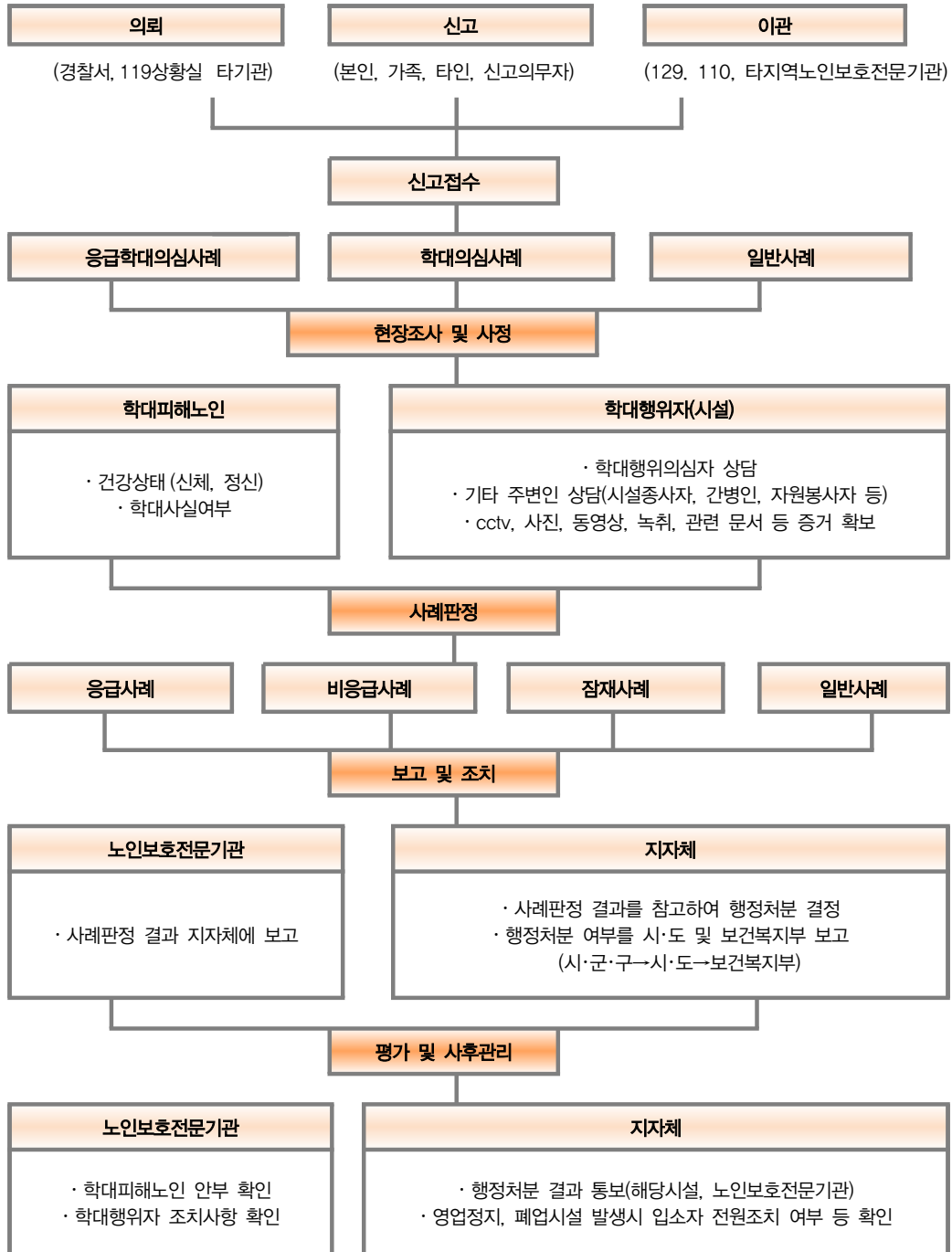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에대한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112 등)
-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신고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 입소 노인 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징후가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신고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전화 110),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하여 노인학대 위험요인 신고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7 노인요양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에 의해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시설의 장은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노인의 영양상태 및 급식 위생상태(유통기한 지난 음식 등)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노인복지시설>

-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작 또는 삭제하면 안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조사 또는 질문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학대의심 사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학대판정 후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 학대사례의 판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를 받은 시·군·구는 조치결과를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시·도는 즉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에 따른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의 조사 등을 통해,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노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 시설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현장조사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와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각 법률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판정결과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치 내용과 함께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당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발생 시설의 장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과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권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인권교육(방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Ⅲ. 시설 안전관리지침

1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시설 내에 생활하는 어르신 중 보행, 인지기능이 양호한 어르신의 경우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 목적지로의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판단력이 저하된 노인(치매 등)이 보호자 동행 없이 무단으로 시설 내를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귀원을 돕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출·외박 절차

자립외출이 가능한 어르신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 자립으로 보행 가능 (보장구사용하여 자립 보행 가능) ● 인지기능상 외출에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	● 안전하게 자립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		
본인·가족의 의사	본인·가족의 의사		
직원에게 알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행선지 파악	직원과의 상담 가능한 행선지, 용무 등을 파악하고 지원방법을 모색		
	단순외출	가족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	가족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직원의 명함, 신상정보 지참 확인	정기외출 프로그램 활용 / 시장보기 등	가족상담/어르신상담 - 일정, 차량 등 조정	자원봉사자·직원연결 - 일정, 차량 등 조정
필요시 대중교통편 안내 인근지역 차량 지원	① 1:1 or 다수로 이동 동행 → 완료 ② 용무 대행	외출준비 안내 ① 의복, 약 등 준비 ② 처치 방법 설명 ③ 유의사항 안내	외출준비, 봉사자 교육 ① 의복, 약 등 준비 ② 처치 방법 설명 ③ 유의사항 안내
외 출	구입·전달, 업무처리 - 영수증 지참	외 출	외 출
귀 원 -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	결과확인 및 교환 - 대장에 기록	귀 원 -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	귀 원 - 안부 여쭙고 건강 확인

1. 어르신 이탈 발견	➡ ① 원내를 다시 살살이 살펴본다. - 장롱, 창고, 계단아래, 욕실, 기타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 ➡ ② 마당, 대문 밖 가까운 거리로 나가 어르신을 찾는다. ➡ ③ 주변어르신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탈당시 정보를 얻는다. - 어르신이 언제까지 머물렀는지 - 최근 어디를 가고자 생각을 말한 적이 있는지 - 나가는 상황을 목격한자가 있는지 (언제쯤, 무엇을 입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타고...) - 교회, 사찰, 친지방문 가능성 확인 ➡ ④ 신상정보를 소지(목걸이, 팔찌, 명함 등)하고 있었는지 확인
2. 신 고	➡ ①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 사진, 신상정보 지참. 이탈 당시 옷차림, 용모 등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 ② 지역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수집 - EX) 콜택시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비상시 무전을 쳐서 이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보고, 직원 비상연락	➡ ① 낮에 발생시 -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의 지시 하에 대처 ➡ ② 야간에 발생시 - 시설 내 조직체계에 따라 상황을 보고 함 - 필요시 평상시 마련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어르신 이탈 상황을 교류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함 - 인근 지역 거주 직원의 협조를 구함 ※ 평상시 정확한 연락망을 구비하고, 실제 상황을 예상하여 연습이 필요함
4. 보호자 연락	➡ ① 어르신의 가출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함 - 어르신이 평소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가보도록 함 - 집으로 도착시 시설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 - 어르신 찾는 상황을 수시로 교류하도록 하여, 서로 협조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 ➡ ② 평소 가족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가족의 반응·의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가족이 예상 장소에 가보지 못할 경우, 직원-파출소와 연계하여 대처 함
5. 어르신 찾기 재신고 및 확인	➡ ① 차량으로 2인 1조로 나누어 한명은 운전, 한명은 살피는 역할로 4~5팀 구성 - 인근대로, 골목길 안쪽, 지하철, 하천아래, 슈퍼 안 등을 꼼꼼히 살핌 - 어르신의 기동상태와 이탈시간을 고려 - 바깥으로 출동시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여 수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 ➡ ② 이탈발견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파출소에 다시 신고하여 협조를 구함 - 콜택시에도 연락하여 무전을 요청 함 ➡ ③ 가족과 상담하여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 확인

7 노인요양

2) 실종시 처리 절차(예시)

6. 전단배포 유관기관 협조, 신고	➡ ① 1~2시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전단지 작성 및 배포 -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이 사진 인상착의, 의복상태 등의 내용으로 전단을 작성하여 출동조에 전달 - 인근지역 주민들이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배포 ➡ ② 경찰서, 구청, 관련 복지시설에 공문으로 가출어르신 정보를 제공하고 입소의뢰 시 협조 구함 ➡ ③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의 '가출노인 찾아주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탈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게시
결 과	
찾았을 경우 ① 각 신고처에 다시 연락하여 찾았음을 보고해야 함 ② 가족, 출동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귀원 조치 ③ 어르신의 건강상태 체크 후 조치 - 체온, 혈압, 맥박, 혈당, 심리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 -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거나, 청결유지, 필요시 병원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함	찾지 못했을 경우 ① 관할 경찰서에 가출노인 신고공문 발송 ② 병원 등 보호 가능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공문발송, 전단배포 ③ 계속하여 찾지 못할 경우 실종신고 - 파출소(지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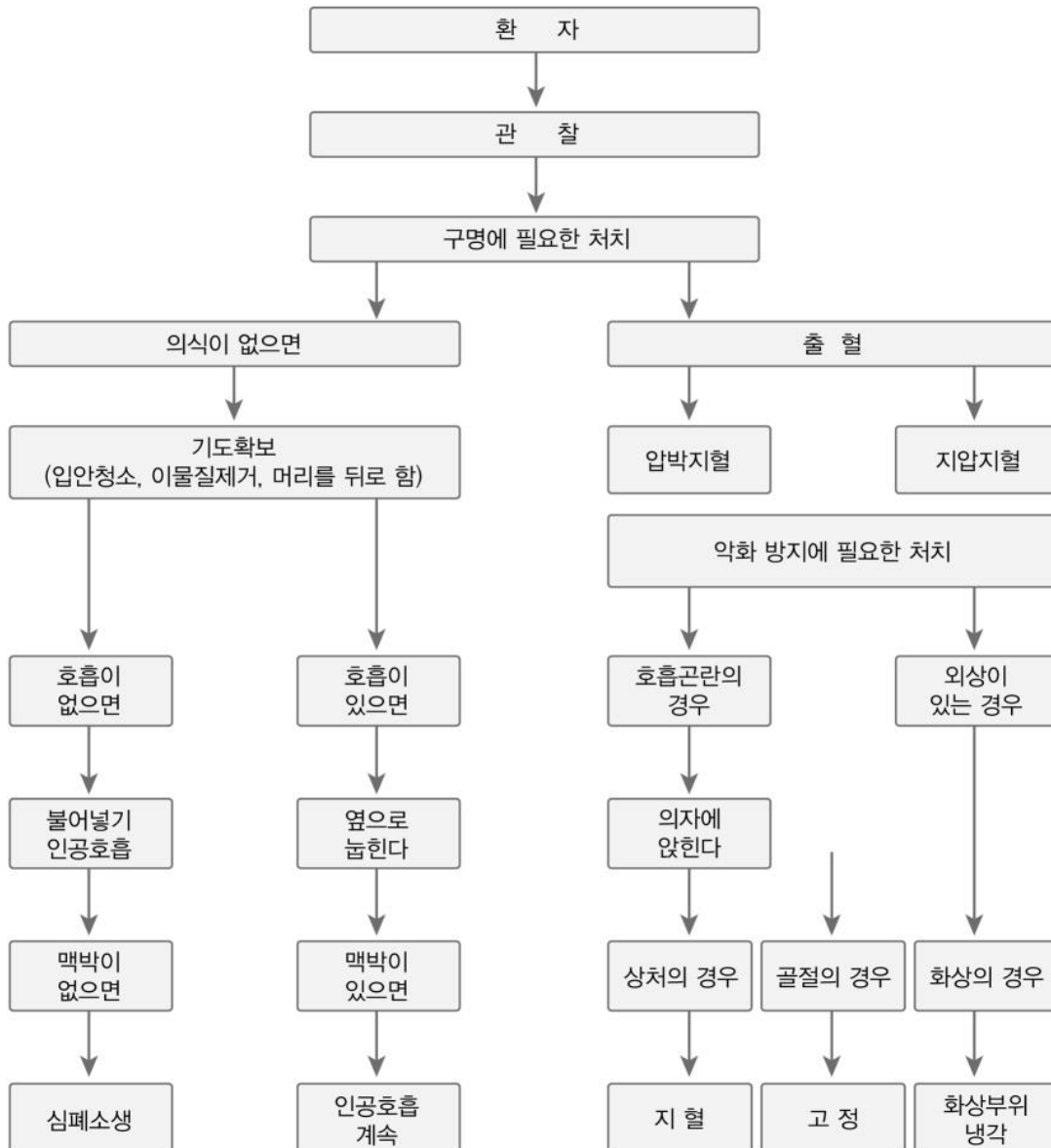
2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과의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 생활노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시설 생활노인이 넘어졌을 경우 골절, 외상, 뇌출혈 등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령자의 경우 뼈가 약함으로 수발 시 이를 유념하여야 하며, 넘어짐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동시에는 가급적 골절 부위를 고정 후 이동하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시 처리 순서



3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 시설장은 시설 생활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장례사유 발생 시 시설의 조치
 - ① 장례 사유발생 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해당 시·군·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는 해당시설에 대해 사망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③ 장례절차는 생활노인의 유지와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생활노인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생활노인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 내에 지정된 장소 또는 장례식장(영안실)에서 시설 주관 하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생활노인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내의 국공립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족동산에 산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한다.
-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생활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유류금품 처리(노인복지법 제28조 및 제48조)

-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생활노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복지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노인복지법 제28조제2항 참조)

-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48조)

* '21. 6. 30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

유류물품 평가 및 목록 작성

- 개인사물 등의 유품처리는 시설 단독으로 현장처리를 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2명(내부1, 외부1 이상) 이상 동행 입회하에 목록(재산적가치 물품, 정서적 유품)을 작성한다.
- 시설장은 유류금전에 대해 사망일 기준으로 현금액을 작성하고 금융재산, 부동산, 귀금속 등에 대한 재산가액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 활용 등
- 사망자의 귀금속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거래소, 금은방, 귀금속·보석 등 판매센터, 전당포 등 평가할 수 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다.
-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은 당시 상황과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되, 그 평가시점 및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 사진·앨범·편지·유서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정서적 유품에 대하여는 시설에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자가 없는 경우 폐기한다.

- 각 시·도는 민법 및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에 따라 매년 12월말기준 시설(요양시설, 양로시설)내 무연고 사망자 및 유류금품 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 및 퇴소 처리

- 시설은 생활노인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처리주체	처리내용
①노인복지시설 또는 ②복지실시기관	□ 무연고자 사망 ○ 복지실시기관*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①노인복지시설 또는 ②복지실시기관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부족 시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28조) ○ 장례처리 비용은 유언에 명시한 사항,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에 사용되되,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한 비용집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임종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은 장례비용에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인당 75만원)이 가능
--------------------------	--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않을 경우*



i) 잔여재산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민법 처리 절차 적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친족, 기타이해관계인(노인복지 시설 등), 검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민법 제1053조)



ii)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민법 특례, 간소화 처리절차 적용**)

□ 잔여재산 보고→(시·군·구) 6개월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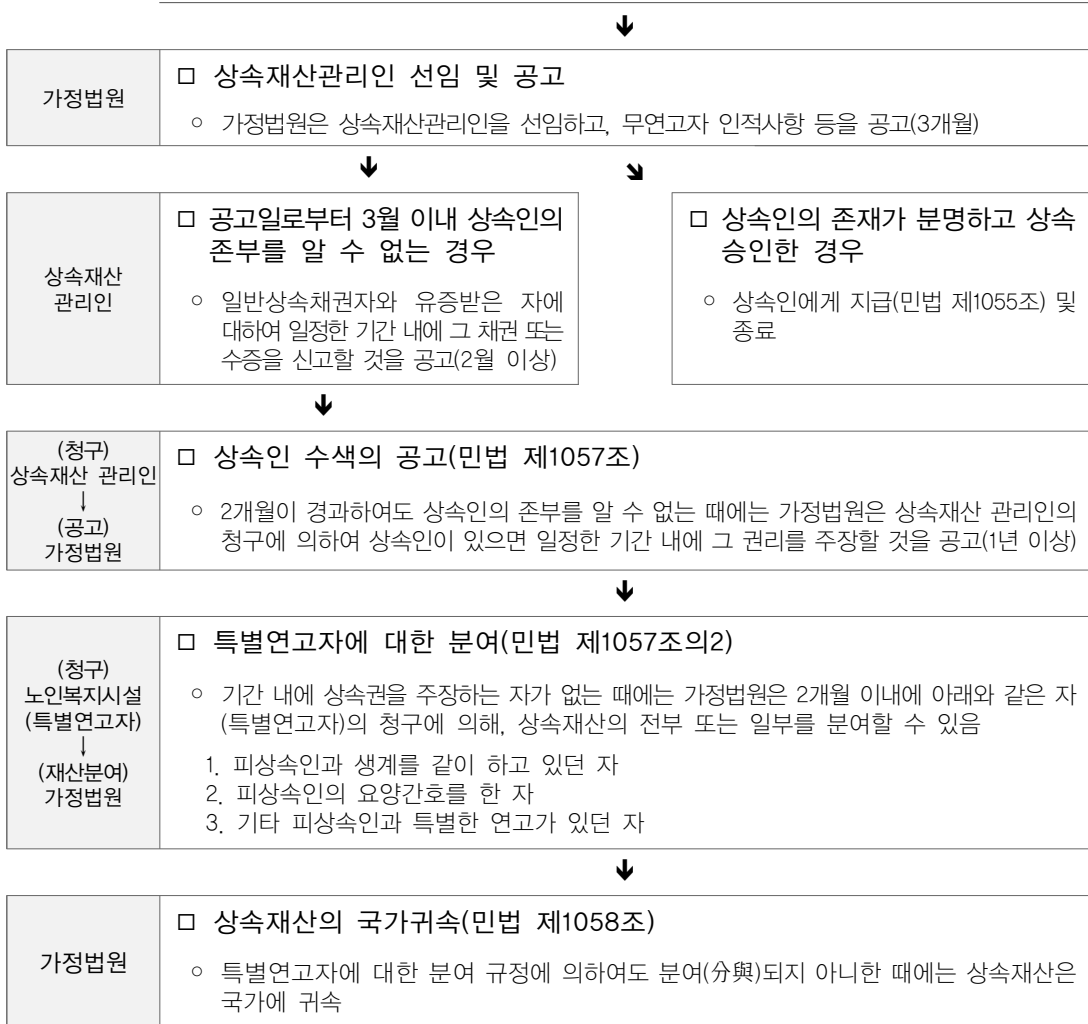
-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 시설 설치·운영자는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군·구청장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34조에 따라 변제
-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변제하고 남은 재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관할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 상속인 존부가 분명한 경우는 가족 등에게 유류금품 인계하여 처리

** '21.6.30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 식, 엑셀〉

시설내 무연고자 사망자 수 및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양로시설

시도	시군구	구 분 (개인, 법인)	시설종류(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시설명	조사결과 (*19.1월~19.12월말)	조치사항	비고
00시	00군	법인 (개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0요양원 (00공동생활가정)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기 선임	-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없이 시설이 보관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0년 0월까지 시정조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정조치는 조사시점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토록 조치
					- 0명의 유류금품에 대해 장례 비용 처리 후 남은 유류금품 (0원)을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임의사용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수사의뢰, 고발	
00시	00군	개인 (법인)	양로시설	00양로원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기 선임	-	
					- 0명의 유류금품(0원)에 대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없이 시설이 보관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0년 0월까지 시정조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정조치는 조사시점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토록 조치
					- 0명의 유류금품에 대해 장례 비용 처리 후 남은 유류금품 (0원)을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임의사용 (개인별 성명 및 유류금품 액수 기재)	수사의뢰, 고발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은 엑셀의 시트를 달리하여 작성

〈예시〉

현 장 점 검 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기관명	
대표자	
시설 소재지 (연락처)	
사망한 무연고자수	

상기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양로·노인요양시설·공생)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 점검 결과

-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등으로 장례비용 충당 시, 사용용도가 적정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 (위 1번 확인사항에 따라 사용용도가 적정할 경우) 장례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7 노인요양

- (장례조치 후) 상속인의 존부가 확실한 경우, 유류금품을 상속인에게 지급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 (장례조치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는지 여부(적정, 위반, 기타)

(점검내용 및 위반사항 등을 기재)

- (위 4번 사항을 확인한 결과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미청구한 경우) 유류금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 ☐ 개인목적으로 사용 ☐ 시설운영비에 사용
☐ 기타 용도로 사용()
☐ 시설이 보관

- 기타 특이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

2022 . . .

지자체 : 소속 성명 (인)

지자체 : 소속 성명 (인)

시설 : 소속 성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예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현장점검 설명자료

1. 확인사항 :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등으로 장례비용 충당 시, 사용용도가 적정했는지 여부	
적정	①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2018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또는 ②유언에 명시한 사항에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
부적정	유언에 명시사항이 없음에도 위 ①의 사항 외의 용도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

2. 확인사항 : (위 1번 확인사항에 따라 사용용도가 적정할 경우) 장례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적정	장례비용에 대해 영수증 처리
부적정	장례비용에 대해 영수증 미처리

3. 확인사항 : (장례조치 후) 상속인의 존부가 확실한 경우, 유류금품을 상속인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적정	상속인에게 지급
부적정	상속인에게 미지급(시설에서 보관, 개인 또는 타 용도로 사용)

3)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점검(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 점검(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소화기구, 자동탐지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여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경보설비 작동여부(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비상구(비상구문*, 비상통로, 직통계단), 방화구획, 배연설비, 경계벽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 비상구의 문은 화재시 화재의 이동을 막는 방화문의 역할을 동시 수행함

《노인요양시설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방안》(18.2.5)

-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 책임자)가 비상구 관리자를 검임하도록 하여 매일 1회 이상 비상구문의 열림 및 잠금상태,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방치 등을 검사후 매일 비상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소방훈련 및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구문 열쇠위치, 비상구 상황 등의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토록 교육하여 대피가 필요 시 직원 누구나 손쉽게 비상구문 개방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시설 여건상 부득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비상구 관리자 검임이 어려운 경우 직원중 1명을 비상구 관리자로 별도 지정·운영
- 비상구 주변 및 비상통로(계단 등)에는 대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되지 않도록 준수하며, 비상구 유도등은 24시간 상시 켜져 있도록 비상구 관리자가 지속관리함
- 노인요양시설 벽면에 비상구 위치가 표시된 건물 평면도를 게시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가 비상구 중요도를 인식토록 하고, 비상구 유도등은 요양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되 대피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토록 함

5)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과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노인요양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 하여야 하며,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며, 이 경우 대피한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거나,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비상대응 훈련 실시

- 기관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 : 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 : 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 : 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5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관리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
-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 반하여 통장 등 개인금품을 시설에서 관리하지 않도록 할 것

6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책임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안전 책임성 강화
 - 안전업무 실무자 관리,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담당자) 시설 내 종사자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책임관을 보조 및 지원
 - ※ 시설은 안전관리책임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는 지정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7

야간 대처 강화 및 야간 인력 배치

- (야간 대처 강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대해 당일 야간 근무 준비상태를 제3자가 확인 후 근무토록 함
 - 당일의 입소현황·최단 대피경로 사전답사·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야간근무자의 초동대처 촉진
 - * 당직자가 아닌 야간 교대근무자(2~3교대)에게도 비상대응 임무를 명시하고, 제3자 (시설장 또는 차선임자)에게 사전보고토록 의무화
-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숙직형태도 가능
 -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실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고용노동부, 「감사·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 ※ 근로시간, 휴게시간 구분 기준은 감사·단속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7 노인요양

근로시간	-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을 규정, 실제 업무를 수행 -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 -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 인정 • 업무수행의 책임을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화재발생 등)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제재나 감시·감속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 •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가능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하는 경우 - 일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가능 시간 -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참고〉 야간근무 지침

▣ 야간 근무지침 표준 ▣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 2) 기관범위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 3) 시간범위 : 야간(22~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총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 2) 보 고 자 : 당직자
 - 3) 확인방법 : 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의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크).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미세먼지 관련 조치사항(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체계
 - 발령권자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 : 문자(담당자), 팩스(기관), SNS, 에어코리아(환경부) 및 시·도 홈페이지
- 보고방법
 - 담당자 연락처 : 시설장은 반기 1회(3월, 9월)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군·구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소관과)
 - 조치결과 : 경보발생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은 조치결과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 및 시·도는 시·군·구 조치현황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취합보고
 - * 시·군·구는 시·도에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경보 발생 후 1주일 이내 취합후 조치결과 제출
 - ** 주의보 발생시에는 보고하지 않음
 - ***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진 자)에 대한 별도 관리, 특이사항 발생시 별도 조치 후 결과보고
- 시설 미세먼지 담당자는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단 계	대 응 요 령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_{10} $100\mu g/m^3$)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_{2.5}$ $70\mu g/m^3$)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 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_{10} 81이상 또는 $PM_{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_{10} 150이상 또는 $PM_{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_{10} 300이상 또는 $PM_{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19년 추경예산으로 설치한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시설은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및 유지관리점검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시·군·구는 공기청정기 사용실태 등을 수시점검
- 시설이 폐업할 경우 해당 공기청정기는 내용 연수(사용가능 했수) 9년을 기준으로 보조금 현금 반납

* 내용 연수(사용가능 했수) 9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7 노인요양

〈서식(예시)〉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공기청정기 관리대장								
○○요양원								
관리 번호	유형	형식	청정 방식	제조 회사	모 델 명 (표준사용면적)	설치 일자	설치 장소	비고
1	공기청정기			○○	○○ (33㎡/10평형)	2019.09.10	000호	1대

〈서식(예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점검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점검표						
점검관리자 :						
관리번호	유형	장착된 필터	관리방법	필터관리내용		
				점검 일자	세정 일자	교체 일자
제 품 명	공기청정기		4회 세정 후 교체			
제조회사	00		추천 교체 시 교체			
모 델 명	00		추천 교체 시 교체			
설치일자	00		램프세정, 교체			
설치장소	00		먼지 제거 청소			
※ 특이사항						

* 점검 및 관리주기는 분기 1회

Ⅳ. 시설 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1

시설 위생관리 시 준수사항

시설에서 필요한 최저한의 감염병과 식중독 등 위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생활노인의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만연되지 않도록 강구·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책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영양사, 생활지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시 대책 및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관리(환경의 정비, 배설물의 처리, 혈액 및 체액처리 등),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표준적인 예방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고, 발생시의 대응으로는 관계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 체제 및 사후관리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설에서 감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음 등)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시군구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은 시군구와 함께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및 감염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 소독, 교육, 소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시 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한다.
 - 시설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시설과 격리되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관리대책수립 및 이행, 음 등 발생 상황 표본조사, 지침 작성 및 배포, 홍보 등
- 시설에서는 시군구 및 보건소에 시설 소독 및 방역 등 조치를 요청한다.
 - 집단적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극 대응 요청

7 노인요양

-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 지침을 토대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 시에는 반드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조리나 세탁 등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내용과 점검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시설은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감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예방 수칙

- 개인위생
 -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기
 - 용변 후 반드시 씻기(종사자는 기저귀 케어 후에 반드시 손 씻기)
 -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기
- 오염예방
 - 화장실, 쓰레기통 등 오염원의 시설개선 및 청결유지
 -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구제
 - 취사, 식사도구 등은 끓는 물에 소독 실시
- 감염경로 차단
 - 날음식, 찬음식의 생식금지
 - 물수건 등의 공동사용금지
 - 오염구역의 소독
- 조리사 등의 위생관리
 - 개인 위생관리 철저
 - 날음식, 어패류의 공동급식 금지
 - 조리기구(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 각각 구분).시설의 청결유지

- 음식물의 장기보관 금지
- 위생교육 철저
- 환자발생시 대처방안
 - 시설 소재지의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응급조치 및 격리수용 조치

3

옴 관리 수칙

정 의	사람의 피부 각질층을 파고드는 옴진드기(<i>Sarcoptes scabiei</i> var. <i>hominis</i>)에 의한 피부 감염증
매개체	옴진드기(<i>Sarcoptes scabiei</i> var. <i>hominis</i>)
잠복기	• 평균 4~6주(2주~최장 8주) * 재감염: 1~4일 이내 증상 발생시
전염 기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옴진드기가 피부에 존재 시 전파 가능
전파경로	• 피부접촉: 환자와 직접적이고 긴밀한 피부 접촉 • 개달물(介達物) 접촉: 환자가 사용한 침구, 옷, 가구 등을 통해 전파
호발장소	위생상태 열악한 집단시설(요양원, 장기보호 시설, 교정시설 등)
임상증상	• 야간 소양감, 구진, 농가진, 발진 등 • 손가락 사이, 손목의 굴측, 겨드랑이, 허리, 발가락, 발목 및 여성의 가슴, 남성의 성기 주변 등에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음
진단 기준	• 임상적 진단: 야간 소양증, 홍반성 구진, 농포 등이 있으면서 ①옴진드기 굴이 확인되었거나, ②옴 환자 접촉력, 요양병원 입원 또는 방문력이 있는 경우 • 현미경 또는 피부확대경 더모스코피(dermoscopy)
감별 진단	포진성 피부염, 약제 발진, 습진, 몸니, 편평 태선, 장미색 비강진
치료	• 5% Permethrin 크림 • 10% crotamiton 크림
합병증	긁은 부위 2차 감염, 찰과상, 습진화, 태선화, 농가진
예방	• 환자와 접촉 금지, 환경 소독 • 환자가 사용한 침구, 옷 등은 50℃ 이상의 물에 세탁한 후 건조

7 노인요양

● 관리방법

- 요양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 환자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
 - 환자 접촉, 분비물 및 의료물품이나 병실 환경 접촉시 손위생
 - 접촉 또는 케어행위시 장갑·마스크·가운 등 착용
 - 정기적으로 오염 확인시 청소와 소독
- 보호자 및 접촉자
 - 환자, 사용한 물품, 환자 주변 환경 접촉 최소화
 - 접촉 전·후 손위생 철저. 필요시 장갑, 가운 등 착용

● 증상

- 일반음 : 특징적인 증상은 야간에 악화되는 가려움과 발진
-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치료

- 처방된 치료제를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 시설내 동거인 등 신체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및 추적 치료

● 예방 및 위생처리

- 개인위생, 보건교육, 집단위생 등 환경개선
 - 환자와 접촉, 오염된 의복,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 또는 공기를 통한 간접전파
 - 환자와 접촉을 피하며, 시설내 입소자 등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해야함
- ※ (잠복기) 4~6주로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전염가능
-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 실내를 철저히 진공청소기로 청소
- 속옷, 침구 등 50~60℃물로 10~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말 것
- 세탁이 어려운 것은 2일간 햇볕에 말리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
- 세탁할 수 없는 의류는 3일 이상 보관한 후에 재사용

● 발생시 조치 사항

- (요양시설) 욕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욕 발생 사실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
 - 부록 「2024년도 욕 예방 및 관리안내서」 준수
 - 노인요양시설에서 욕 전염 위험성이 높은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설청결 유지 및 입소자 건강관리에 철저
- (건보공단) 시설 청결유지, 감염병 방지 대책(환자 사용 내의, 침구 소각 등) 시행 및 발생 현황 복지부 보고
 - 욕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치료계획(병원 격리치료 실시 등)을 수립하여 완치 시까지 직접 관리하고 완치 후 종료처리
 - 시설에 욕 발생 위험 전파 및 관리 안내 철저
 - * 욕의 발생원인,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 배포
 - “욕발생 실태조사” 실시 : 최근 발생 시설, 욕 다발 발생 시설 방문조사
- (시군구·보건소) 시설 소독, 방역 등 조치
 - 집단 욕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시설에 대한 소독 등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적극 대응
 - * 욕 발생 시설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
 - 욕 환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요청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 (보고 정례화) 각 시도는 시설에서의 생활노인 및 종사자의 감염병(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욕 등) 발병현황 및 밀접접촉자(돌봄입소자) 감염예방 조치실적(진료포함)을 아래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에 보고
 - ※ 빈대 발생 시에도 위의 조치 사항을 준수하며, 부록 「빈대 정보집」 참고하여 예방·방제 활동 실시

7 노인요양

환자 발생일자	환자 인적사항				환자 조치사항 등		밀접접촉자 조치사항	비고
	병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조치사항	완치 여부		
'19.0월0일	옴	입소자	홍길동	'00.0월 0일 (00세)	병·의원 진료 및 처방, 격리치료 등	완치	입소자 0명 병·의원 진료 또는 진료·처방등, 종사자 0명 병·의원 진료 또는 진료·처방등	
"	결핵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분류)	심청	"	"	치료중	"	
합계			입소자 0명, 종사자 0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분류)			완치 0명, 치료중 0명	입소자 0명, 종사자 0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분류)	

4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재가)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검진

-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설은 입소 예정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
- 또한,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개정('17.11.3.시행)

V.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지침

1

인권침해 행위로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성폭력(「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행위로서 개별법률은 이의 예방, 신고 및 사건처리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책무 등을 규정

‘성희롱’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 (관련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바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제7호,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마목 등

- 개별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 (노인)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대응 필요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등 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짐.
-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홍보·교육 및 연구
-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사업주의 책무

-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사업주는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무가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종사자의 책무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및 제5조)

■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시설장의 책무

1)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임·직원의 채용 시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취업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임 등의 조치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의2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함.
 -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의 배포·게시, 전자우편 발송 또는 게시판에 공지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음.

☉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성희롱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봄.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3) 시설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종사자 간 또는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 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 지침 마련

☉ 성희롱 예방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창구* 설치·운영
 - * 사이버 신고 창구의 설치, 고충처리기구 등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6조)
 - *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

- 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고충상담원 지정 및 독립성 있는 고충처리기구 구성·운영 권고

* 성희롱 상담 및 조사절차 추진 등을 위한 전담 직원을 두고, 고충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기구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및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조치

- (사업주의 의무)
 -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당하여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 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 사업주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조치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7 노인요양

- 사회복지시설 이용 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등에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퇴거 조치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 다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은 이용자의 인지능력,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바람직.
-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 이를 위반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자목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 조치
- 사회복지시설 이용 계약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등에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퇴거 조치 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 다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은 이용자의 인지능력,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바람직.
- 이용자 이용수칙 등을 이용자가 상시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 또는 비치

4)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종사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성희롱 사건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 *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처우(예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예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업무 관련자들의 비밀 보호 유지 등 2차 피해의 발생 방지

-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피해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누설 금지

●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

- (피해자 보호조치) 시설장은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종사자에 대한 조치) 시설장 또는 담당공무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서비스 제공인력을 해당 업무로부터 즉시 배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

7 노인요양

- (보호자 통지) 피해자의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의 발생을 즉시 알리고, 관련 구제 절차 및 외부 조력기관*에 대한 안내

* 법률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조사 협조) 수사기관 또는 전문 지원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 협조
- (비밀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관련자들의 비밀 보호 유지 등 2차 피해의 발생 방지
 -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피해 사실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누설 금지
- (후속 조치)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된 경우 시설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실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시설장은 피해 이용자 모니터링 및 지원 연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이용자에 의한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 (관련 법률) 시설 내에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발생은 「민법」,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피해자 보호조치) 시설장은 이용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신고의무)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아니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또는 개별 법령이 피해자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 (보호자 등에게 사실 안내) 피해자의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에게 피해 사실의 발생을 즉시 알리고, 관련 구제 절차 및 외부 조력기관*에 대한 안내.

* 법률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조사 협조) 수사기관 또는 전문 지원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 협조
-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인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예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4

종사자의 의무

- 기관장과 동일하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가중처벌함.
- 시설 내에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함.

5

이용자의 의무

-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용자 이용수칙 등을 명확히 주지하며, 시설 내에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함.

[부록]

2024년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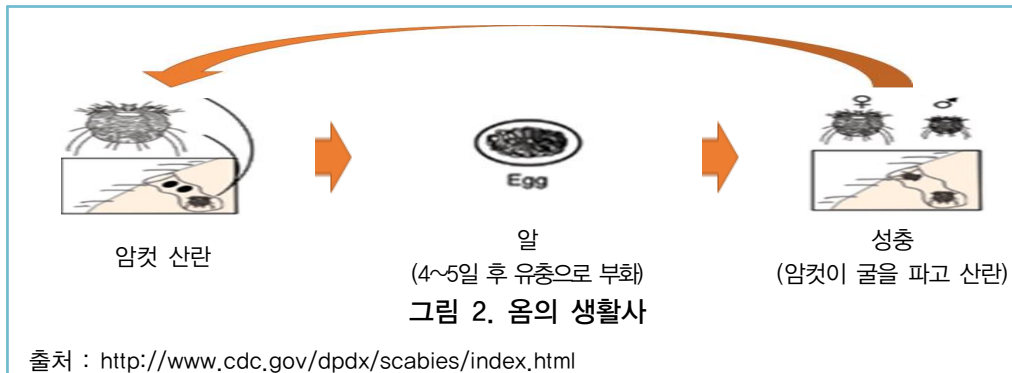
1 매개체의 특성⁶⁾

- 옴진드기(*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중 암컷이 사람의 피부 가장 겉 부분인 각질층 내에 굴을 파고 선상병터를 형성
 - * 이때 진드기에서 나오는 소화액, 분비물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여 심한 소양감을 동반한 피부질환 발생
- 사람의 피부 표면에서 1분에 2.5cm 이동하며 평상의 실내 온도와 습도의 조건에서 24~36시간 생존
- 기온이 낮고 건조한 조건보다 20℃ 이상의 덥고 습한 여름철 기후에 활동성이 증가
- 숙주(사람)에서 떨어져 나온 경우, 최대 4일간 생존 가능

옴진드기의 생활사⁷⁾

: 알, 유충(larva), 약충, 성충의 단계를 거침

- (알) 암컷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 내 굴을 만들어 매일 4~5개씩 산란하며 4~5일 안에 부화
- (유충, 약충) 부화한 후 유충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여 손상되지 않은 각질층에 구멍을 뚫고 굴을 만들며, 유충이 탈피한 후 약충이 됨
- (성충) 10~17일 후 성체 진드기가 되어 피부 표면에서 교미, 교미 후 암컷은 산란을 위해 바로 각질층에 굴(burrow)을 파고 하루 2~3mm씩 이동하면서 산란, 4~6주 기생하면서 평균 35~50개의 알을 낳음. 수컷은 교미 후 피부 표면에서 2일 이내 죽음
- 각질층 내 알은 성충이 되어 교미 후 알 낳기를 반복함



6) Baik Kee Cho, Reemerging skin disease caused by arthropods I: scabies, J Korean Med Assoc 2011 May; 54(5): 511~520, <https://www.cdc.gov/dpdx/scabies/index.html>

7) <https://www.cdc.gov/parasites/scabies/biolog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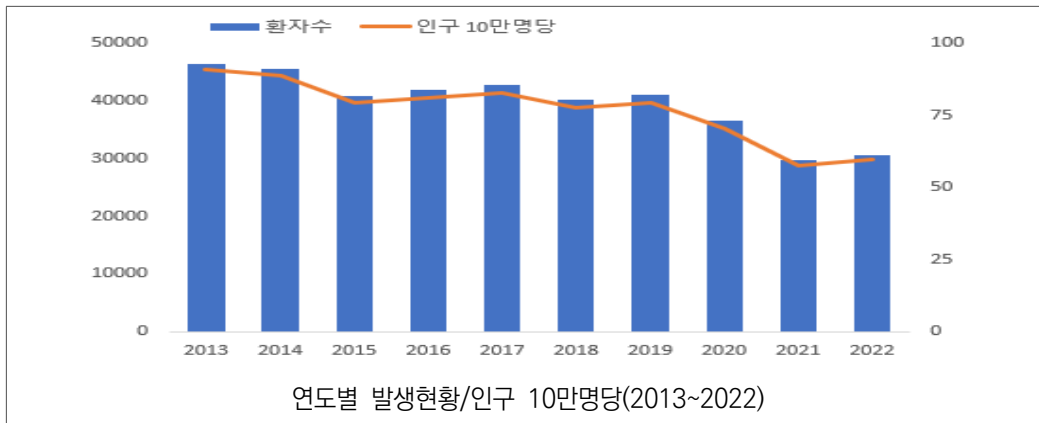
2 발생 현황 및 역학적 특성

가 세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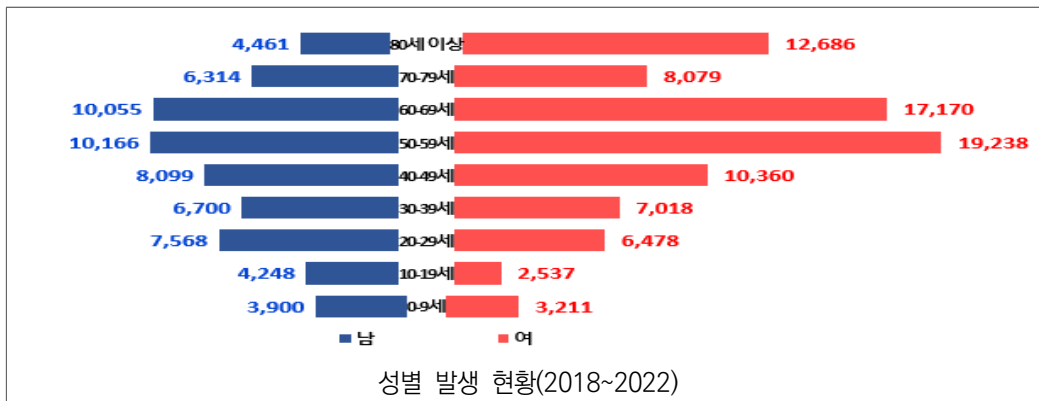
-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
- 주로 남태평양 국가들에서 높은 유병율

나 우리나라 현황⁸⁾

- (연도별) 발생 추이(10년)는 완만한 감소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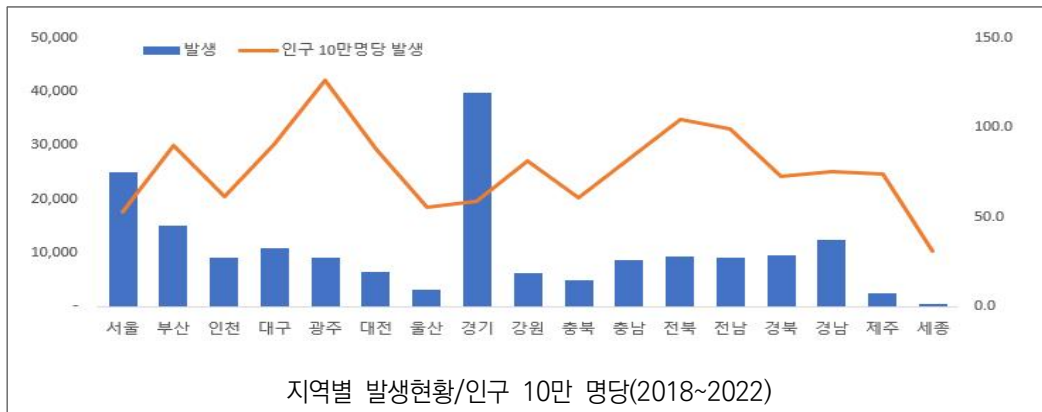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50세 이상 연령에 집중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의 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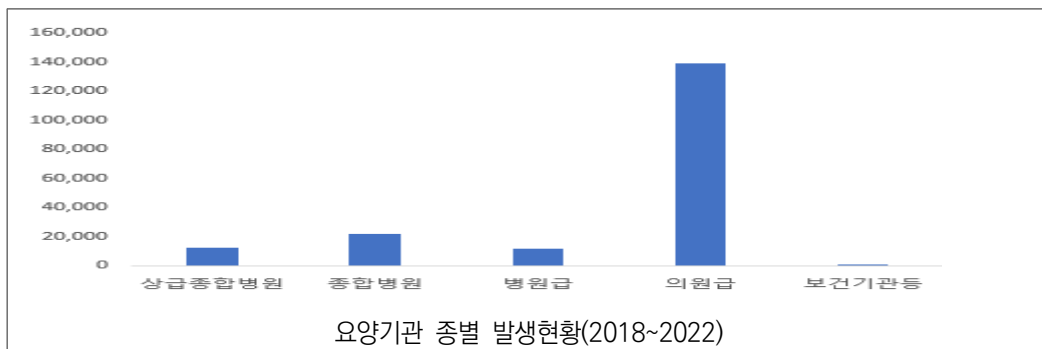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lInsInfoTab1.do>

7 노인요양

- (지역별)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이며 진단 건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며,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보정 시 광주, 전북, 부산 순위



- (요양기관별) 중증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80% 이상이 의원급에서 진료



* 병원급: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의원급: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다 역학적 특성

- 최초 감염 후 증상(가려움증)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4~6주(2주~8주)이며, 해당 시기에 전파가 가능하며, 재감염인 경우는 1~4일 이내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전파경로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피부, 성접촉이며 딱지옴의 경우 일반옴에 비하여 전파력이 강함
- 침구, 의류, 가구 등에서 진드기 개체가 2~3일 생존 가능하여 직접 접촉 외에 개달물, 환경에 의한 전파도 가능함

라 욕 근절 방해 요인⁹⁾

60년대 이후 위생환경, 의료 접근성 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 고령 인구의 증가
- 치료약물에 대한 내성 증가¹⁰⁾
- 면역억제제 사용 증가
-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이용자의 증가

3 임상적 특성

- ‘고전적인 욕(Classic scabies)’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병변의 형태로, 선형 굴처럼 약간 솟아오른 모양이며 진드기는 앞쪽 가장자리에서 검은 점으로 보일 수 있음. 어린이와 성인의 경우, 굴, 결절 및 발진이 손과 발의 측면에 확인됨
- 얼굴에 침범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벨트 라인, 유두, 엉덩이, 생식기에도 발생할 수 있음. 음경 또는 음낭 결절은 욕 특이적 증상임.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습진성 병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염될 수 있음
- 욕진드기 감염의 첫 징후는 보통 밤에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피부에 얇은 굴이 보임. 이는 일반적으로 감염 후 3~6주 후에 확인되며 감염자와 접촉한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의심해야 봐야 함
- ‘딱지욕(Crusted scabies)’은 노인,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또는 영양실조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함. 비늘 모양의 발진과 진드기가 많은 두꺼운 피부 가피형성이 특징임. 소양증이 없을 수도 있으며 치료가 더 어려움

9) Hyojin Kim, Current status of scabie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23 December; 66(12):696-699

10) Cho BK. Reemerging skin disease caused by arthropods I: scabies. J Korean MED Assoc 2011 May; 54(5): 511-520

4 진단

가 임상적 진단

- 야간의 소양증, 흥분성 구진, 농포 등이 있으면서
 - ① 옴진드기 굴 확인 또는,
 - ② 가족력, 옴 환자 노출력 또는 요양병원 입원이나 방문력

나 실험실 진단

- 현미경 또는 피부확대경 더모스코피(dermoscopy) 검사로 확인
 - ① 현미경 검사: 옴진드기 굴이 의심되는 부위 또는 손톱 밑 등에 광유(mineral oil)를 떨어뜨린 후 외과용 칼로 6~7회 긁어서 각질세포가 포함된 광유를 긁어모아, 유리슬라이드 위에 놓고 옴 진드기 충체, 알, 혹은 배설물(scybala) 확인
 - ② 피부확대경 더모스코피(dermoscopy) 검사: 옴진드기의 존재 확인

5 치료

가 치료제 종류 및 도포 방법

- 옴진드기를 사멸시키는 약물(scabicides)로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
 - ① 5% 퍼메트린 크림(Permethrin)
 -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펴 바르고 12~14시간 후에 물로 씻어냄
 - 이론상 1회 도포만으로도 충분하나 치료 실패를 줄이기 위해 1주 간격 2회 도포 권장, 마지막 도포 일로부터 2주 경과 후 내원하여 완치 여부 확인
 - 2세 미만의 영유아, 임부, 수유부, 면역억제자, 노약자는 사용할 수 없음

② 10% 크로타미톤(Crotamiton) 연고

-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항소양 효과도 있으나 치료 효과는 퍼메트린보다 낮음
- 결절염이나 소아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결절이 있는 부위에는 장기간 도포
- 3~5일(예, 1일, 2일, 3일 그리고 8일째) 동안 매일 도포하여 8시간을 유지함

나 치료 경과 및 합병증

-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을 경우 수주일 내 호전
- 치료 후 2~4주 이상 지속 가려움증이 있거나 새로운 굴이나 발진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 필요
- 수주~수개월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이차 세균감염으로 인한 농가진, 농창, 종기, 연조직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두드러기, 동전 모양의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도포 용법 준수 여부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충분히 도포 함

6 예방**가** 개인위생

- 환자와 접촉을 피함
- 같이 사는 가족이나 구성원 등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가 4~6주로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

나 보건교육 강화

- 직원, 보호자, 간병인 등 대상 정기적인 보건교육

7 노인요양

다 시설 환경 개선

-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시설 내 청결한 환경 유지

라 집단시설 감시 강화

- 신규 입소자 대상 스크리닝(검사) 강화, 입소 전 피부에 붉은 자국 등 욕 관련 증상 유무 확인
-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사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욕 감염여부 점검 필요
- 욕 발생 시설에서 타기관으로 전원시 욕 환자 접촉력,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함

7 자주 하는 질문

욕이란 무엇인가요?

- 해답 ▶** - 욕 진드기라는 아주 작은 벌레처럼 생긴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감염을 말합니다.
- 암컷 욕진드기는 피부 표면 바로 아래에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하여 4~5일 후 유충이 되고 10~15일 후 성충이 됩니다. 성충은 피부 표면에서 교미 후 암컷 진드기가 피부에 굴을 파고 산란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사를 되풀이하면서 감염을 확산 시킵니다.

욕은 어떻게 감염되고 확산이 되나요?

- 해답 ▶** - 욕은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이나 옷 또는 침구, 수건 등과 접촉할 때도 옮습니다.
- 욕은 주로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피부접촉을 통해 확산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주거생활을 하며 밀접하고 친밀한 접촉관계에서 감염이 쉽습니다. 군대나 요양소, 함께 사는 가족(동거인), 병원에서 동실 사용 환자의 경우 감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옴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 있나요?

- 해답 ▶** - 붉은 발진이 생기고, 보통 극심한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에 더 심해집니다.
- 발진은 손가락 사이, 손목과 팔꿈치 안쪽, 가슴, 남성의 성기, 벨트 라인,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유아에게는 머리, 목, 손바닥 또는 발 바닥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굵게 되면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옴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해답 ▶**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시어 치료를 받으시고, 긁어서 피부에 손상이 생기면 이차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차 감염이 된 경우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옴진드기에 감염이 공동주거지에서 생긴 경우 접촉자들은 모두 환자와 동시에 치료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옴이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이 되나요?

- 해답 ▶** 동물은 동물의 특이적인 옴진드기가 있습니다. 드물게 동물의 감염이 보고되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사람은 사람 옴진드기에 주로 감염됩니다

옴에 걸린 사람과 가벼운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나요?

- 해답 ▶** 악수, 일시적인 포옹은 일반적으로 옴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옴진드기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 해답 ▶** 옴진드기는 1~2개월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보통 48~72시간 이상 생존하지 못합니다, 옴진드기는 50°C(122°F)의 온도에 10분 동안 노출되면 죽습니다.

공공 수영장에서 옴을 수 있나요?

- 해답 ▶** 옴은 옴이 있는 사람과 피부접촉에 의해 감염됩니다. 옴은 때로는 겹옷, 침구 등 물건을 통해서도 퍼질 수도 있지만 수영장에서 감염은 거의 없으나, 샤워시설에서 로션이나 수건의 공동사용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카펫이나 옷에 있는 진드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답 ▶ 옴진드기의 약을 바른 후 2~3일 이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옷이나 침구, 의복, 수건 같은 물품은 뜨거운 물(50~60℃)로 10~20분간 세탁 후 건조 시키고, 최소한 72(3일) 시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펫은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세심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옴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치료해야 합니까?

해답 ▶ 예. 옴이 있다고 생각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서 검사하고 진단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옴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인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해답 ▶ 예.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 잠복기 동안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병인은 옴의 추가 감염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옴이 있는 환자가 사용한 방은 소독을 해야 합니까?

해답 ▶ 예. 딱지옴 환자가 사용한 방은 진공청소기 등으로 철저히 청소하고 살충 소독합니다. 또한 청소한 진공청소기는 살충제로 닦아내고 사용한 스펀지 등은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록]

빈대 정보집 (요약본)

질병청에서 발간한 「빈대 정보집」 전체본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

01 빈대 특징

가 빈대 형태적 특징

- 성충은 약5~6mm,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타원형이며 진한 갈색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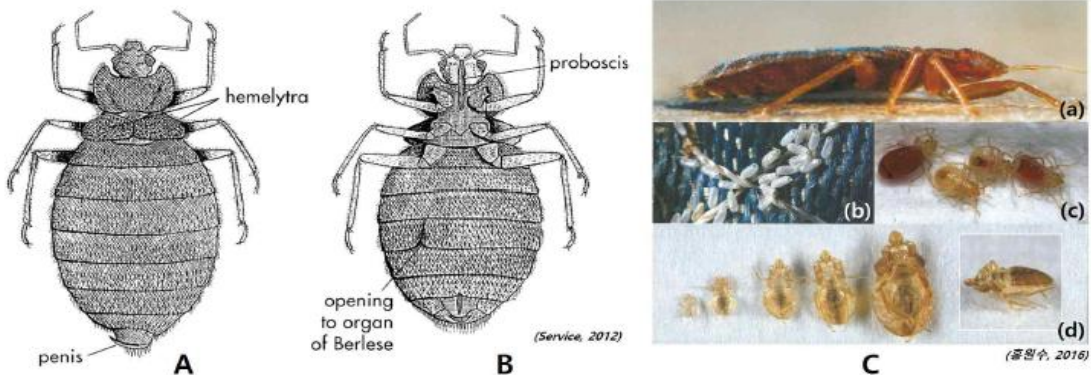


그림 1. 빈대의 형제

(A)수컷(등면), (B)암컷(배면), (C)발육단계별 형태. (a)성충, (b)알, (c)1령 약충, (d)단계별 탈피각

나 빈대 생활사 및 습성

- 1주일에 1~2회 흡혈하며, 10분간 몸무게의 2.5~6배 흡혈
- 하루 2~5개의 알을 2~3일 간격으로 낳아 일생동안 약 200개 산란함
-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혹은 벽지 틈에 끼어들어 숨어있다가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며,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히 활동

02 빈대의 인체 영향

가 인체 영향

- 현재까지 질병을 매개한 기록은 없으나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2차적 피부감염 생기기도 함
- 여러 마리에 의해서 동시에 노출 시 드물게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킴

나 빈대물림 임상증상

- 물린 자국이 일렬로 나타나며, 피부 발진 위치는 수면 중 노출되는 부위임

다 진단 및 치료

-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
- 가려운 증상은 일반적인 치료없이 1~2주 내 회복, 극심한 가려움과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크림,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사용

03 빈대 발견 시 방제 방법

가 물리적 방제(스팀 고열처리 등)를 우선 실시하고, 화학적 방제(살충제 분무)는 보조적으로 수행

-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
 -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 모든 빈대가 제거될 때까지 커버 유지

- 오염된 물품 폐기 시, 반드시 방제 후 폐기
 -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방제 실시 7~10일 후에 확인 및 추가 방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빈대 유무 확인

나 물리적 방제

- 스팀 고열을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여 방제
 - 카페트는 살충제 처리 전 스팀 청소
 - 벽에 맞닿아 있는 카페트, 침대(특히, 침대의 머리맡 부분)는 반드시 방제
- 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침대(내부필수), 매트리스, 소파, 가구, 벽지 등 오염된 모든 장소 주변의 알, 약충, 성충을 포집하여 제거
 - 진공청소 끝난 후에는 내용물을 진공 봉투(비닐봉지에 밀봉)에 버림
- 오염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50~60℃ 건조기에서 약30분 이상 처리하여 방제

다 화학적 방제

- 빈대용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살충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를 사용
- 빈대에 직접 분무가 우선,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인체 접촉이 없는 곳)에 분사하여 방제하며 보호장비 착용 등 주의사항 준수
-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의류, 침대, 이불, 매트리스, 침대 라인 등에서는 살충제 사용 제외
- 가열 연막 또는 훈연(일명 연막탄)방법은 효과가 적고 숨어있던 빈대가 약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사용하지 말 것

04 빈대 예방법

- 빈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함부로 가져오기 않기

7 노인요양

- 빈대 징후 확인을 위해 침대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중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점검하여 빈대의 배설물이나 탈피각(껍질)을 확인

* 주요 발생지 : 매트리스 가장자리 및 솔기, 침대 벽면, 침대 프레임, 벽 등
* 빈대는 침대와 인접한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등의 지점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됨
* 빈대는 벽면 콘센트, 천장, 벽면을 통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확산됨
*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도 빈대가 확인되면, 해당 숙소에서의 빈대 밀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

- 청소 시 진공청소기 또는 스팀 청소기 활용을 권장함

* 빈대는 45℃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사멸함
* 빈대는 약 60℃ 이상의 물에 세탁할 경우, 효과적으로 살충시킬 수 있다고 보고함
* 하지만 일반 고온 세탁의 경우, 평균 40℃ 내외로 빈대 살충에 효과적이지 않음
* 건조기의 최대 온도는 브랜드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로 확인되어 빈대 살충에 효과적임

- 벽지와 걸레받이 등 벽의 균열 및 틈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수리
-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시설용)’를 사용하여 수시 점검

[부록]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을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I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

- 수급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II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노인학대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Ⅲ 장기요양기관 장의 역할

장기요양기관 장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보호자) 및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급여 계약·제공·관리 과정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교육, 녹음기기 착용 권고 등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양측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인권교육)

-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를 가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시행령 14조4, 시행규칙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시행령 14조의4)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의3)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7 노인요양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이 상호 존중할 때 ‘좋은 돌봄’이 완성됩니다.

작성 일자 : 20 년 월 일

수급자 성명: _____(서 명)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성명: _____(서 명)

보호자 성명: _____(서 명) 장기요양기관: _____(서 명)

[부록]

〈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한 사전 점검표(예시) 〉

사전 점검 내용	예	아니오	모름
• 대상자가 독거로 거주중인가?	☐	☐	☐
• 대상자가 고립된 거주지(고시원, 쪽방, 지하 등 취약주택)에 살고 있거나 일정 성별로만 구성된 가족과 거주중인가? (□남 □여, 주거 특이사항 :)	☐	☐	☐
• 대상자가 위험행동 이력(정신질환으로 돌발행동, 주사, 자살시도, 알콜 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폭력 등 범죄) 또는 잠재성이 있는가?	☐	☐	☐
• 대상자가 이전(기관) 급여제공 시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	☐	☐
• 대상자가 성범죄 또는 성희롱으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또는 연관 또는 잠재성이 확인된 적이 있는가?	☐	☐	☐
• 대상자가 고위험 감염 요소(결핵, 수두, 풍진 또는 전염위험이 있는 모든 질병 포함)를 가지고 있는가? (질병명: 약물복용:)	☐	☐	☐
• 대상자가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실직, 재정적 어려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등)를 경험했는가?	☐	☐	☐
• (반려동물) 방문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는가? ※ 반려동물의 종류, 위험성, 분리요청, 반려동물 위생상태 등 추가 확인	☐	☐	☐
• (특이사항) 주수발자 또는 동거인이 위험행동 이력(정신질환으로 돌발행동, 자살 시도, 주사, 알콜 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폭력 등 범죄) 또는 잠재성이 있는가? (대상자 , 내용:)	☐	☐	☐

작성 일자 : 20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_____(서 명) 사회복지사 성명: _____(서 명)